

예산 증액안 협의 요청서

- 수 신 : 도시건설위원회
- 통보일시 : 2022. 12. 12.(월) 10시 10분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 중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예산 증액 협의 요청안 1부.

2022. 12. 12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 수 현 (인)

예결위 시 상임위원회 협의 건 안내

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(예산안 심의)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,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.

다만,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,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2023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 상임위 협의 건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(단위 : 천원)

연번	페이지	위원회	예산과목					예산액			결과	협의결과
			부서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산출기초	예산안	상임위 안	예결위안		
1	343	도시건설 위원회	도시계획과	성북구 중점지역 도시전략계획 수립	207 연구개 발비	01 연구용역 비	1)성북구 중점지역 도시전 략계획 수립	350,000	345,200	350,000		